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2818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표 1, 별표 3”으로, “별표 10 및 별표 11”을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및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2022년 7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0714.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714	1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2. 건조한 것			
		가. 칩(chip)	주정용	0	185,000톤
		나. 펠릿(pellet)	사료용	0	수입 전량

별표 9 중 0203.19란 및 0203.2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0203	19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삼겹살	0	18,000톤
			2. 기타	0	4,000톤

0203	29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삼겹살	0	12,000톤
			2. 기타	0	36,000톤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2]

2022년 10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703		양파·샬롯(shallot)·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9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대파	0	448톤

[별표 13]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201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1	2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	100,000 톤
0201	30	뼈 없는 것		0	
0202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	2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	82,500 톤
0202	30	뼈 없는 것		0	
0207		제 0105 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i>Gallus domesticus</i> )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207	1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82,500 톤
0207	14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절단육 2. 설육(屑肉) 나. 기타		0 0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 한 육·설육(屑肉)·피·곤충			
1602	3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 01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602	3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 <i>Gallus domesticus</i> )종의 것 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삼계탕이 아닌 것	0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 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 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2	10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 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탈지분유	0	
0402	2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 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			10,000 톤
0402	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전지분유	0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 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 은 상관없다)			
0901	1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			
0901	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수입 전량

0901	12	카페인을 제거한 것		0	
0901	2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	2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0901	22	카페인을 제거한 것		0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	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조주정(粗酒精)		0	75,000 킬로리터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항공유(제트연료유)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	20,000,000 배럴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2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항공유 제조용 원유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을 '10,000톤'에서 '30,000톤'으로 확대하고, 소고기·닭고기 등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